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

유의사항

1. (각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교환·환불요건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신청이 각하(却下)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이 각하된 경우, 흠결된 요건을 보완한 후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재위원 구성) 중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중재당사자 간 합의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중재위원 선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된 중재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중재합의) 중재 규정 수락은 중재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却下)합니다(「중재법」 제9조제1항).
4. (증거방법) 중재요건 및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은 중재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인이 직접 중재부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중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
7. 수리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신청인이 해당 결함 내지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 또는 점검을 요청하여 수리 또는 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신청인이 대상 자동차를 실제 인수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2. ②는 중대한 하자일 경우 2회 수리 후 재발 시, 일반 하자일 경우 3회 수리 후 재발 시의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3. ③은 중재판정으로 제작자에 요구할 사항으로, 교환 또는 환불 중 한 가지에 √ 표시 합니다.
4. ④는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 중대한 하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하자
 - 일반 하자: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5. ⑤는 매매계약 시 중재 규정 수락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중재신청 시에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표시를 하고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인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법」 제8조의 중재합의로 인정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며,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却下)합니다.

처리절차

